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확대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소방청	작 성 자	이름	노시환
	담당부서 (과)	소방분석제도과		직급	소방경
	국장	홍영근		연락처	044-205-7522
	과장	박진수		이메일	hongbo119@ma il.go.kr

2025. 03. 13. 작성

정책책임자 화재예방국장 홍영근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확대								
	2.규제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위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4.08~2025.05.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연결살수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시행령 별표4가 개정되지만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계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조기경보와 신속진압 가능토록 소방시설 개선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포함하여 적합한 소방시설 설치여부 검토가 필요함.								
	7.규제내용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 포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차고, 주차장 등의 건축주 ○ 이해관계자 : 소방시설설계업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이해관계자</td><td>소방시설설계업자</td><td>1357</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이해관계자	소방시설설계업자	1357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이해관계자	소방시설설계업자	1357								
9.규제목표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설계 및 건축설계의 적법성 검토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table><tr><th>기술영향평가</th><th>경쟁영향평가</th><th>중기영향평가</th></tr><tr><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r></table>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중요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포함시켜 건축허가 초기 단계부터 내실있는 도면검토가 규제의 실효성 및 규제효과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table><tr><th>대분류</th><th colspan="2">소분류</th></tr><tr><td>일몰설정 예외기준</td><td>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td>미해당</td></tr></table>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 ----- ----- ----- ----- ----- -----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 ----- ----- ----- 가. ----- <u>층이</u> ----- ----- -----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나. ----- <u>주차시설</u>

현 행	개 정 안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 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별표4] 관련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조기경보와 신속진압이 가능토록 소방시설을 강화 하였음.

※ 200㎡이상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200㎡미만 연결살수비상경보단독경보형 감지기

-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함

- (문제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사전에 적법한 설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에 추가토록 보완이 필요함.

○ (정부개입 필요성)

- 건축허가 동의제도는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소방시설의 설치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해 사전에 소방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초기단계에서 부터 동의대상에 포함하여 관리가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유지안) 현행안을 지속할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허가 초기 단계부터 도면 검토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없음
- (규제대안2)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력이 낮아

규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힘들 것임

- (규제대안1) 따라서, 중요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포함시켜 건축허가 초기 단계부터 내실있는 도면검토가 규제의 실효성 및 규제효과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건축주	(3.24.~5.2.) / 온라인 /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예정)		
대국민	(3.24.~5.2.) / 온라인 /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예정)		

3. 규제목표

- 중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포함시켜 건축허가 초기 단계부터 적합한 설계등의 검토를 통해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 나아가, 소방시설 등의 적합성 검토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권을 보장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목적) 본 규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 및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초기 단계부터 설계 등의 적합성 검토를 통해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규제수단) 규제수단은 건축허가 초기 단계부터 소방서에서 적합한 설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포함하는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경우 건축기획·사전조사(Pre-Design)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국의 계획과 토지이용규제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계획 설계·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건축안 전국의 건축가(City Architect)와 설계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건축주가 건축허가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설계내용이 관련 법규 등과 일치하는 지를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 일본의 건축허가 및 검사업무는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실시하였으나, 건축기준의 성능 규정화 작업이 진척되면서 보다 수준 높은 심사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지정확인검사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을 개정함.
- 이 제도는 확인검사업무에 정부 및 민간기관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건축주의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일본의 건축주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건축행정의 민간화·개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 지정확인제도라고 할 수 있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건축허가 시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대하여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포함시켜 소방서에서 설계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안전을 고려한 사항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큼.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일선 소방서에서 건축허가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인력이나 장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행정적 집행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시·도 소방서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25.2.28.~3.10.)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이행사항(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도개선 마련·대응 추진

3. 종합결론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건축허가 초기 단계부터 소방시설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안전관리 제고가 가능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에 포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에 포함>

①파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활동제목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 포함
편익항목	건축허가 초기단계부터 동의대상에 포함하여 적합한 도면 검토 등 안전관리 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건축허가 초기단계부터 동의대상에 포함하여 적합한 도면 검토 등 안전관리 강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확대																
	2.규제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별표4)																
	3.위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4.08~2025.05.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지하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위험,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관리 강화 필요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개입																
	7.규제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류 확대 ❶- 지하 차고주차장 사용면적의 200제곱미터 미만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설치 ❷- 지하 차고주차장 사용면적의 200제곱미터 이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❸ - 리튬1차 전지공장은 시각경보기 설치 ❹ -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우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경우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미만의 주차시설은 연결살수설비 설치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 이해관계자: 특정소방대상물 이용자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td><td>2000</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2000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2000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화재로부터 건축물 이용자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table><tr><td></td><td>비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tr><td>피규제자</td><td></td><td></td><td></td></tr><tr><td>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td><td></td><td></td><td></td></tr><tr><td>주요내용</td><td colspan="3"></td></tr></table>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정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이후생략) 1) ~ 5) (생략) <u>6) (신설)</u> 나. 비상경보설비를~ (이후생략) 1) ~ 4) (생략) <u>5) (신설)</u>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이후생략) 1) ~ 14) (생략) <u>15) (신설)</u> 라. 시각경보기를~ (이후생략) 1) ~ 4) (생략) <u>5) (신설)</u>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이후생략) 1) (생략) 2) 수련시설, 운동시설, <u>숙박시설</u>,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5. 소화활동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이후생략)	2. 정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이후생략) 1) ~ 5) (생략) <u>6)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의 경우 해당부분</u> 나. 비상경보설비를~ (이후생략) 1) ~ 4) (생략) <u>5)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의 경우 모든 층</u> 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이후생략) 1) ~ 14) (생략) <u>15)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의 경우 모든 층</u> 라. 시각경보기를~ (이후생략) 1) ~ 4) (생략) <u>5) 리튬1차 전지공장(리튬을 주요 전극 재료로 사용하며, 다시 충전해서 쓸수 없는 1차전지의 공장을 말한다.)</u>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이후생략) 1) (생략) 2) 수련시설, 운동시설, <u>숙박시설, 공장</u>,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5. 소화활동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이후생략)

현 행	개 정 안
1) ~ 3) (생략)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u>1천m</u> 이상인 것 나. 연결살수설비를~ (이후생략) 1) ~ 4) (생략) <u>5) (신설)</u> <u>6) (신설)</u>	1) ~ 3) (생략)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u>500m</u> 이상인 것 나. 연결살수설비를~ (이후생략) 1) ~ 4) (생략) <u>5)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의 경우 해당부분</u> <u>6)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미만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지붕과 외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지하주차장, 공장, 터널 등 화재취약대상에 화재 위험,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해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미설치 현행유지
	내용	화재취약대상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없이 현행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화재취약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내용	화재취약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하도록 기준 마련 * (현행) 소방시설 미설치 → (개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시설 설치
규제대안2	대안명	화재취약대상에 소방시설 자율적 설치(비규제 대안)
	내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화재취약대상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방시설 설치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비용 미발생	화재취약대상에서 화재 시 피해 발생 예방 및 피해 최소화 곤란
규제대안1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화재안전관리 강화	화재취약대상에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 비용 발생
규제대안2	화재취약대상 건축주의 안전 관리 투자의 자율성 담보	비규제 대안으로 집행력이 약화되어 소방시설 설치 저조 예견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계인	'25.3.24~5.2/온라인/소방시설법 시행령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음	
대국민 (관련 업체 및 소비자)	'25.3.24~5.2/온라인/소방시설법 시행령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행안을 지속 (**현행유지안**)할 경우, 화재취약대상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음
- 한편, 건축주의 자율적 규제 (**규제대안 2**)에 맡기는 경우, 현실적으로 집행력이 낮아 규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힘들 것임
- 따라서, 화재취약대상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규제대안 1**)가 규제의 실효성 및 규제효과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 화재취약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 피해 최소화 등 화재안전성 확보
- 나아가,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전 확보가 가능해져 건축주 및 건축물 사용(이용)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목적) 본 규제는 화재취약대상의 안전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규제수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화재취약대상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사항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사항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사항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사항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사항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사항 없음
판단 근거	해당사항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사항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사항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육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소방시설 해외 규정

기준명	제정기관	제정연도
Risk Insight: Electric Vehicle Charging	Zurich resilience solutions(스위스)	2021
Charging of electric cars in parking garages	Research Institutes of Sweden(스웨덴)	2020
RC59: Recommendations for fire safety when charging electric vehicles	FPA(영국)	2021
ELECTRIC VEHICLE CHARGING AND ENCLOSED CAR PARKS	RSA Insurance Group(영국)	2021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NEC)	NFPA(미국)	2019
NFPA 88A Standard for Parking Structures	NFPA(미국)	2019
NFPA 520 Standard on Subterranean Spaces_2016	NFPA(미국)	2016

<출처: 한국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방재와보험 187호'>

○ 터널에 제연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기준 확대

- 현재 국내 제연설비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연장등급 500m 이상 터널은 의무설치하고 있어 추가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 연결송수관설비는 설치 연장등급 1,000m 이상 의무설치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서 외국과 같이 터널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장등급을 500m로 축소하여 강화 필요

소방시설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연결송수관 설비	· 1,000m ↑	· A등급(300m ↑) · B등급(1,000m ↑) · 200m 정도간격	· 600~400m 이상 터널 적용 · 150m간격 (비상호출스테이션)	· 소화전에 연결송수관설비 시설	· 소화전에 연결송수관설비 시설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표 2.3〉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방재시설 \ 터널등급	1등급 (3,000m ↑)	2등급 (1,000m ↑ ~ 3,000m ↓)	3등급 (500m ↑ ~ 1,000m ↓)	4등급 (500m ↓)
연결송수관설비	●○	●○		

●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만

◎ 보강설비 : 운영 중 연장 3등급 및 연장 4등급 중 250m 초과하고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NFPA	일치	

○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화재취약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화재취약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직접		
· 소상공인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준비용		연간균등준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신축하는 화재취약대상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연결살수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화재취약대상 화재 예방을 통한 재산·인명피해 최소화 등 편익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일선 시·도 소방서에서 화재취약대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건축허가 소방동의 시 적법 설계 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시·도 소방서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최근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부천 코보스호텔('24.8.22.),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등

- 1)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조기경보와 신속진압 가능토록 소방시설 개선
 - ❖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6./ 관계부처 합동)
- 2) 공장 중 리튬1차 전지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 ❖ 화재초기 시각 경보를 통해 신속한 피난유도('24.9.9./ 전지공장화재 재발방지대책)
- 3)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 ❖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 추가('24.8.6./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
- 4) 도로터널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기준 강화(1천m이상→500m이상)
 - ❖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사매2터널 교통사고('20.7.20./ 행안부 재난원인조사 개선권고 과제)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이행사항(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도개선 마련·대응 추진

3. 규제 정비계획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관련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	—	—

4. 종합결론

- 개정안은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조기경보와 신속진압 가능토록 소방시설 개선하고, 공장 중 리튬1차 전지공장 시각경보기 설치, 도로터널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강화(1천m이상→5백m이상) 내용으로

- 규제대안의 비교평가, 국내외 사례 및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추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부담(비용)에 비해, 공사현장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장 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편익이 크고
- 또한 금회 강화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설과 화재진화하는 시설로 대형화재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화재취약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화재취약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활동제목

지하주차장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로 화재안전관리 강화

비용항목

설비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X 설치 개소 X 단가
((295*200*685+174*150*29,025+174*150*38,459+1,389*3*19,930+215*200*38,459))

근거설명

①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대상

구분	대 상
정량 분석	❶ 지하층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면적 200㎡미만인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설치
	❷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❸ 20대 미만의 지붕과 외벽이 있는 기계장치 주차시설에 연결살수설비 설치
	❹ 터널(500m~1,000m)에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정성 분석	❶ 지하층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면적 200㎡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❷ 리튬1차 전지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② 소방시설 설치 대상 현황(별표 5)

○ 최근 5년간('20~'24년) 특정소방대상물 신규 현황

대 상		평균증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❶ 지하층 차고·주차장으로	150㎡미만	174	187	175	211	169	129
	200㎡미만	121	143	129	137	126	74
❷ 공장		1,389	170,530 1,696	171,964 1,434	173,063 1,099	176,310 3,247	175,779 -531
❸ 20대미만 기계식주차장 (지붕과 외벽있는경우)		215	264	212	241	213	146
❹ 터널(500~1,000m)		18	879 7	916 37	961 45	979 18	963 -16

《 근거설명 : ❶·❷ 소방청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❸ 시도현황파악 ❹ 국토부 현황통계 》

※ 비고

1. 최근 5년간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및 국토부 건축물 현황통계 자료
2. ❶ 시도별 소방시설완공대상중 200㎡미만 지하주차장 파악 ❷국토부 현황자료

※ 소방시설별 공사금액

설비명	(주)00프이원	00소방	(주)00안전 기술단	평균금액 (원)
연결살수설비(원/㎡)	39,717	39,782	35,879	38,459
비상경보설비(원/㎡)	29,426	29,246	28,404	29,025
단독경보형감지기(원/㎡)	659	731	665	685
시각경보기(원/㎡)	4,646	4,916	4,424	4,662
가스누설경보기(원/개) *인터넷 쇼핑가	17,790	13,500	28,500	19,930
연결송수관설비(원/㎡)	118,571	126,101	117,025	120,566

※ 소방시설 설계업체 3개소에 소방시설별 공사금액 조사결과 / 2025.3월

○ 대상별 소방시설 설치 비용 산정

- ❶ 지하층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면적 200㎡미만인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	비용(원)	대상*	면적(㎡)**	단가(원/㎡)*
❶ 단독경보형 감지기	40,415,000	295	200	685
❷ 비상경보설비	757,552,500	174	150	29,025
❸ 연결살수설비	1,003,779,900	174	150	38,459

* 최근 5년간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교부대상중 200㎡미만의 차고 또는 주차장이 포함된 특정소방대상물 완공현황 파악(전국시도, '20~'24년)

** 차고 주차장의 200㎡로 가정

***소방시설 설계업체 3개소에 소방시설별 공사금액 조사결과 / 2025.3월

※ 연결살수설비,비상경보설비는 현행 지하150㎡이상 설치, 150㎡미만 대상으로함

- ❷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대상	비용(원)	대상*	개**	단가(원/개)***
❶ 공장	83,048,310	1,389	3	19,930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장의 신설 수(최근5년 평균증가 수)

대상	평균증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❶ 공장	1,389	170,530	171,964	173,063	176,310	175,779
		1,696	1,434	1,099	3,247	-531

** 가스시설이 설치된 수를 3군데라고 가정함.

*** 인터넷 네이버쇼핑 금액으로, 가스누설경보기 3개모델의 평균값

③ 20대 미만의 지붕과 외벽이 있는 기계장치 주차시설에 연결 살수설비 설치

대상	비용(원)	대상	면적(m²)*	단가(원/m²)*
㉠ 20대미만 기계주차	1,653,737,000	215	200	38,459

* 평균10대의 기계주차시설의 연면적을 200m²로 가정

** 연결살수설비 설치 단가 : 38,459원/m²

구분	연결살수설비(원/m)
A공사업체	39,717
B공사업체	39,782
C공사업체	35,879
평균	38,459

<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체 공사단가 조사. 20025. 3월 >

④ 터널(500m~1,000m)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 터널은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기 때문에 규제비용 미포함

대상	비용(원)	대상*	길이(m)**	단가(원/m)***
㉡ 터널(500m~1,000m)	3,164,857,500	35	750	120,566

※ 비고

* 연장길이 500~1,000m의 터널의 경우 18개소

** 연결송수관설비 500~1,000m의 중간 길이로 750m로 가정

***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단가 : 120,566만원/m

《 연결송수관설비 공사 단가 산출내역 》

구분	연결송수관설비(원/m)
A공사업체	118,571
B공사업체	126,101
C공사업체	117,025
평균	120,566

<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체 공사단가 조사. 20025. 3월 >

※ 터널 500~1,000m 기준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공사비 산정

③ 비용추계

○ 소방시설 설치 비용 : 3,538백만원

대상	합 계	대 상	개소 면적(m)	단 가(원)
	40,415,000	295	200	685
① 차고주차장 200㎡미만	757,552,500	174	150	29,025
	1,003,779,900	174	150	38,459
② 공장(가스시설)	83,048,310	1,389	3	19,930
③ 20대미만 기계식주차장 (지붕외벽 있는 경우)	1,653,737,000	215	200	38,459
④ 터널(500m~1,000m)	3,164,857,500	35	750	120,566
합계(원)	3,538,532,710	※터널 제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 명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활동제 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확대										
비용항목	설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①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대상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r><tr><td rowspan="4">정량 분석</td><td>① 지하층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면적 200㎡미만인 경우 단독경 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설치</td></tr><tr><td>②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td></tr><tr><td>③ 20대 미만의 지붕과 외벽이 있는 기계장치 주차시설에 연결 살수설비 설치</td></tr><tr><td>④ 터널(500m~1,000m)에 연결송수관설비 설치</td></tr><tr><td rowspan="2">정성 분석</td><td>① 지하층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면적 200㎡이상인 경우 자동화 재탐지설비 설치</td></tr><tr><td>② 리튬1차 전지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td></tr></table>	구분	대 상	정량 분석	① 지하층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면적 200㎡미만인 경우 단독경 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설치	②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③ 20대 미만의 지붕과 외벽이 있는 기계장치 주차시설에 연결 살수설비 설치	④ 터널(500m~1,000m)에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정성 분석	① 지하층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면적 200㎡이상인 경우 자동화 재탐지설비 설치	② 리튬1차 전지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구분	대 상									
	정량 분석	① 지하층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면적 200㎡미만인 경우 단독경 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연결살수설비 설치									
		②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③ 20대 미만의 지붕과 외벽이 있는 기계장치 주차시설에 연결 살수설비 설치											
④ 터널(500m~1,000m)에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정성 분석	① 지하층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면적 200㎡이상인 경우 자동화 재탐지설비 설치										
	② 리튬1차 전지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② 지하층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면적 200㎡이상인 경우 자동 화재탐지설비 설치											
○ 현행 차고·주차장의 200㎡이상인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를 적용하고 있으나(시행령 별표4, 1.소화설비, 바, 3))											
－ 시행령 별표5, 5.물분무등소화설비에 따라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있음.(물분무등소화설비에 비하 여 설치비용 저렴하고 동파우려가 없어 설치되고 있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25호 및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고 있어 설치비용은 추가로 늘어나지 않아 정성분석이 적절함. ③ 리튬1차 전지공장 시각경보기 설치비용 산정 ○ 리튬1차 전지공장은 총 3개소* * 주-비○○셀, 제○○너지-주, SO BOOEL ※ 비교 1. 일반적으로 1차전지와 2차전지로 분류되고 1차전지는 한번만 사용하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전지로서, 수은, 망간, 아연, 리튬등이 있고, 그 중 우리나라 리튬을 원료로 하는 1차전지 공장은 극소수(3개소)이며, 향후에도 증가요인이 없음 - 2차전지는 방전후에 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임. 2. 또한, 시각경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물에 한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시행령 별표4, 2.경보설비, 라. 시각경보기 ~), 설치되더라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부속 부품으로 설치되어 경미한 공사금액이 증가하는 부품임(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8조제2항 참조
--	--

②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신축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활동제목	화재 피해 감소
편익항목	안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안전관리를 제고 －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조기경보와 신속진압 가능토록 소방시설 개선 － 화재초기 시각 경보를 통해 신속한 피난유도 －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강화 ○ 나아가, 소방시설 설치 강화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권을 보장

